

지역토론회 (제주)

“제주지역 조정신청대상 보도기사의 뉴스구조 특성”



위원회는 올바른 언론문화 정착과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지난 5월 13일 제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제주지역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각계에서 약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낙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가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제주중재부에 접수된 조정대상 기사의 뉴스구조 특성을 분석, 주제발표를 하였다.

일 시 2011년 5월 13일(금) 10:30 ~ 13:30

장 소 제주 KAL 호텔 (2층 그랜드볼룸)

발 제 자 최낙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사 회 자 부상준 (제주중재부장,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편집자 주 - 다음은 주제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주제발표문 원문은 위원회 홈페이지 (www.pac.or.kr) '정보자료실(각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I. 서론



언론중재위원회의 존립목적은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에 있어 부정적인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면이 다분히 많았다. 언론중재위가 언론 피해자의 권익에 기여하고, 예방효과 측면에서 언론 보도의 질적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잘못된 언론보도는 언론중재위의 존립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탐색은 언론중재위의 존립목적에 강화하고, 필요악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그간 언론중재위에서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이 되었던 기사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언론보도의 피해를 가져온 뉴스사례의 뉴스생산 과정과 잘못된 관행들을 지적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조정 및 중재 대상 기사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제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지역에서 조정 및 중재 신청 대상이 되었던 뉴스기사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독자적인 자기 점검의 의미에서 제주지역 뉴스보도의 특징과 그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제주지역 언론은 지역 나름의 특수성과 관행이 매우 강한 곳인 만큼, 그 해결책도 제주 안에서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모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제주지역에서의 실험적, 시험적 연구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전체 기사를 가늠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의 보편적 기여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제주도에서 조정 및 중재 신청의 대상이 되었

던 뉴스기사 연구가 전국에서 이루어진 조정 및 중재 신청 대상 기사의 특징과 그 문제점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연구는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 기사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거나, 중재위의 결정에 대한 판단의 적절성을 논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음을 밝혀 둔다. 이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이 되었던 보도기사의 뉴스구조 특성을 살펴보는 것에 직접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분석대상 기사의 시시비비나 중재의 결정에 대한 판단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데이터에 의해서 설명 가능한 부분으로 극히 제한하였다

II. 연구문제



언론조정신청대상이 된 보도기사들의 뉴스구조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조정신청대상 기사의 뉴스구조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1-1. 중심주제 유형은 어떠한가?

1-2. 보도행태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보도행태의 차이는 ‘리드(lead) 기사의 가치적 술어 사용여부’, ‘보도태도의 차이’, ‘의견 제시 유형의 차이’에 대한 검증으로 이루어졌다.

1-3. 정보인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보인용은 정보원 출처 활용 수, 실·익명 처리, 정보인용 출처 명확 여부, 제목인용과 본문과의 일치여부에 대한 검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문제 2】 청구항목별로 기사의 특성은 어떻게 나

- 2-1. 매체유형별로 청구항목과 피해유형은 어떠한가?
 2-2. 연도별 청구항목은 어떠한가?
 2-3. 청구항목별 피해유형, 신청인유형, 의견제시 유형은 어떠한가?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는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 접수된 제주지역 모든 매체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중재위에 접수된 제주지역 매체의 조정신청건수는 175건이었으나, 실제 기사 수는 129건이었다. 이는 하나의 기사에 병합청구가 이루어졌거나, 동일 매체의 동일 기사가 다른 신청인에 의하여 청구된 경우를 하나의 기사로 집계한 결과이다.

2. 측정항목

연구대상 기사의 뉴스구조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항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측정항목은 ①매체유형 ②기사유형 ③신청인 유형 ④기사의 중심 주제 ⑤정보인용 유형 ⑥기사의 보도행태 ⑦청구항목 및 피해유형 등 크게 일곱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Ⅳ. 연구결과



1. 연도별 기사건수 변화 및 청구매체유형 특성

(1) 기사건수

제주중재부는 1989년도부터 중재업무를 시작하였다. 198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언론중재위 통계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 조정청구는 175건이며, 실제 기사건수는 129건이었다. 조정청구와 기사건수의 차이는 일부 기사에서 병합청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체 129건 가운데 청구건수가 2005년 10건, 2006년 12건, 2009년 21건, 2010년 13건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2007년과 2008년은 각각 2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하지만, 당해 연도 청구건수는 2007년 15건, 2008년 7건으로 이는 2006년도 후반부 기사가 2007년도에 청구되었기 때문이다.

1989년부터 2004년까지는 각 연도별로 청구건수와 기사건수가 동일하다. 이는 기사 한 건 당 하나의 청구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하나의 기사당 병합청구가 이루어져 청구건수가 기사건수보다 많이 나타난다. 한편, 2006년과 2009년에 예외적으로 청구건수보다 기사건수가 많은 것은, 청구는 2007년과 2010년도에 이루어졌지만 기사보도는 그 이전 연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2) 매체유형

1989년에서 1993년까지는 인쇄매체인 일간지, 주간지, 잡지에서만 청구가 있었다. TV는 1994년에 처음으로 청구가 나타났다. 1996년에서 2002년까지는 일간지에서만 청구가 있었으며,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는 일간지와 TV 두 매체에서 청구가 있었다.

2006년에는 인터넷신문에서 처음으로 청구가 나타났으며, 포털에서는 2010년에 처음으로 청구가 나타났다.

연도별 매체유형의 변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간 일간지 위주의 청구에서 2009년부터는 인터넷신문과 포털 등 온라인미디어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점이다.

2. 매체유형별 뉴스구조 특성

(1) 기사유형

기사유형별로 보면, 스트레이트 108건(83.7%), 가십 10건(7.8%), 심층기획 6건(4.7%), 사설 3건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 기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뉴스 기사유형의 특성상 스트레이트 기사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전체적으로는 일간지에서만 다양한 유형의 기사를 볼 수 있었으며, 여타 모든 매체(잡지 별도)에서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전부였다.

(2) 중심주제

일간지의 경우, 82건의 기사 가운데 행정/정책 25건(30.5%), 범죄/사고 17건(20.7%)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주간지는 3건 모두 행정/정책(100%) 분야였다.

지역TV는 23건 가운데 범죄·사고·재난(11건, 47.8%)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인터넷신문은 14건 중 7건이 교육(50.0%) 분야였으며, 포털은 5건 가운데 3건이 범죄·사고·재난(60.0%), 2건이 경제(40.0%)였다.

중심주제로 보면, 일간지에서 정치, 행정/정책, 경제, 환경, 교육, 의료, 범죄·사고·재난, 문화, 스포츠, 인물·미담, 역사, 종교 등 12개 분야에서 각각 청구가 있었다. 지역TV는 행정·정책, 경제, 교육, 의료, 범죄·사고·재난, 종교 등 6개 분야, 인터넷신문은 행정·정책, 경제, 교육, 의료, 범죄·사고·재난 등 5개 분야, 포털사이트는 경제와 범죄·사고·재난 등 2개 분야였다.

(3) 리드가치 부여 여부

일간지의 경우, 가치를 부여한 기사가 67.1%(55건)이었으며, 부여하지 않은 기사는 32.9%(27건)였다. 반면, TV는 가치를 부여한 기사가 30.4%(7건)이고, 하지 않은 기사는 69.6%(16건)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도 가치부여를 한 기사(28.6%, 4건)보다 하지 않은 기사(71.4%, 10건)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일간지별로 리드가치 부여는 제주타임스 3건(75.0%), 한라일보 17건(70.8%), 제민일보 19건(67.9%), 제주일보 16건(57.1%) 순이었다. TV에서는 JIBS가 4건 가운데 3건(75.0%)의 기사에 리드가치를 부여하였다.

제주 주간지 3건(100%), 월간잡지 2건(100%) 모두는 리드문장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반면, 포털사이트는 5건(100%) 모두 가치부여가 없었다.

(4) 보도태도

일간지는 보도태도에서 비판/부정적 기사(45건, 54.9%)가 중립/양비론적 기사(37건, 45.1%)보다 많았다. 제주 주간지(3건)와 월간잡지(2건)의 경우, 모두 비판/부정적 기사였다.

이에 반해 TV는 중립/양비론적 기사(17건, 73.9%)가 비판/부정적 기사(6건, 26.1%)보다 많았다. 인터넷신문도 중립/양비론적 기사(10건, 71.4%)가 많았다. 포털의 경우는 5건 모두 중립/양비론적 기사였다.

일간지에서는 비판/부정적 기사가 제주타임스(3건, 75.0%), 한라일보(13건, 54.2%), 제민일보(15건, 53.6%), 제주일보(50.0%) 순으로 나타났다. TV에서는 JIBS만 비판/부정적 기사(3건, 75.0%)가 많이 나타났다. 중립/양비론적 기사는 KCTV(2건, 100%), KBS제주(7건, 87.5%), 제주MBC(7건, 77.8%) 순이었다.

(5) 의견제시 유형

포털사이트(5건, 100%), 주간지(3건, 100%), 월간잡지(2건, 100%) 모두 일방의견제시형이었다. TV에서도 일방의견제시형(20건, 87.0%)이 상반의견제시형(3건, 13.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일간지는 상반의견제시형(39건, 47.6%)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간지 일방의견제시형은 43건(52.4%)이었다.

일간지의 상반의견제시는 제민일보(17건, 60.7%), 제주타임스(2건, 50%), 한라일보(11건, 45.8%), 제주일보(9건, 32.1%) 순이었다. TV에서는 JIBS 1건(25%), 제주MBC 2건(22.2%)의 상반의견제시가 있었다. KBS제주와 KCTV에서는 상반의견제시형 기사가 없었다. 포털과 월간잡지에서 상반의견제시는 없었다. 인터넷신문에서는 1건(8.3%)이 있었다.

(6) 정보원(原) 출처 활용 수

정보원(原) 출처가 나타나지 않은 기사는 14건으로 그 가운데 일간지가 13건(92.9%)이었으며, TV에서 1건이 있었다. 취재원이 나타나지 않은 일간지 13건의 기사는 제주일보 7건, 한라일보 3건, 제민일보 2건, 제주타임스 1건으로 나타났다. TV 1건은 KBS제주였다.

주간지(3건, 100%)와 포털(5건, 100%)의 경우, 모든 기사의 정보원(原) 출처 활용 수는 1개였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신문(10건, 71.4%), TV(13건, 56.5%), 월간잡지(1건, 50.0%), 일간지(32건, 39.0%) 순이었다.

2개의 정보원(原) 출처 활용은 TV(8건, 34.8%), 인터넷신문(4건, 28.6%), 일간지(23건, 28.0%) 순으로 나타났다. 여타매체에서 취재원이 2명인 기사는 없었다.

정보원(原) 3개를 활용한 사례는 일간지(12건, 14.6%)에만 나타났다. 정보원(原)이 4명 이상인 경우는 일간지(2건), TV(1건), 잡지(1건)였고, 매체는 한라

일보, JIBS, 월간잡지였다.

(7) 정보인용 출처

인터넷신문(14건, 100%), 포털사이트(5건, 100%), 월간잡지(2건, 100%) 모두 정보인용출처가 명확하였다.

정보인용출처가 불명확한 경우는 일간지가 8건(11.6%), TV 2건(9.1%), 주간지 1건이었다.

(8) 실명 · 익명 처리

완전실명 기사 26건은 일간지 21건, TV 2건, 인터넷신문 1건, 월간잡지 2건이었다. 일간지 완전실명 기사는 한라일보 8건, 제주일보 6건, 제민일보 6건, 제주타임스 1건이었다. TV는 KBS제주와 제주MBC가 각각 1건이었고, 인터넷신문 1건은 제주의 소리였다.

일간지의 경우, 완전실명(21건, 32.3%), 성명만(16건, 24.6%), 지역과 성명만(10건, 15.4%), 암호형인용(9건, 13.8%), 완전익명(9건, 1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간지는 2건 모두 암호형인용이었다.

TV는 성명만(13건, 61.9%), 완전실명(2건, 9.5%), 지역과 성명만(4건, 19.0%), 암호형인용 1건, 완전익명 1건이었다.

인터넷신문은 암호형인용(6건, 46.2%), 성명만(5건, 38.5%), 완전실명(1건, 7.7%), 지역과 성명만(1건, 7.7%) 순이었다. 포털은 암호형인용 2건, 성명만 1건이었다.

일간지 완전익명 9건은 제주일보 3건, 한라일보 3건, 제민일보 3건으로 나타났다. TV의 경우, 완전익명 1건은 JIBS이다.

(9) 연도별 실 · 익명 현황

1998년까지는 완전실명 기사가 전적으로 많은 편

이었다. 1990년과 1994년 각각 2건의 기사 모두 완전 실명기사였다. 1995년은 8건의 기사 가운데 7건이, 1998년은 6건의 기사 중 5건이 완전실명기사였다.

완전실명기사는 1999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공인(公人)으로 분류 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완전실명기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참고로 2009년 1건은 당시 도지사 친인척 회사 관련 기사였으며, 2010년 1건은 도내 모 대학 이사장 관련 기사였다.

2003년도 이후부터는 성명만 밝히는 경우와 ‘A씨’와 같은 암호형 인용이 많아졌다.

(10) 제목인용

매체별 제목 따옴표는 전체기사 129건 가운데 39건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제목 따옴표 인용 기사 39건은 일간지 33건(84.6%), 인터넷신문 5건(12.8%), 주간지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로는 제민일보 16건, 한라일보 9건, 제주일보 7건, 제주타임스 1건이었다.

(11) 제목인용과 본문일치

제주일보의 제목 따옴표 기사 7건은 본문과 완전일치 5건(71.4%), 부분일치 2건(28.6%)으로 나타났다.

제민일보는 16건 가운데 완전일치 10건(62.5%), 부분일치 5건(31.3%), 완전불일치 1건이었다. 한라일보는 9건 중 완전일치 4건(44.4%), 부분일치 5건(55.6%)이었다. 제주타임스와 주간지는 각각 부분일치 1건씩이었다.

인터넷신문은 5건 가운데 완전일치 3건(60.0%), 부분일치 1건, 완전불일치 1건으로 나타났다.

3. 청구항목과 피해유형의 특성

(1) 매체유형별 청구 현황

일간지는 청구건수에서 정정보도 57건(69.5%), 반론 11건(13.4%), 손해 3건(3.7%), 추후 1건이었으며, 병합청구인 정정+반론 1건(1.2%), 정정+손배 3건(3.7%), 추후+손배 3건(3.7%), 정정+반론+손배 3건(3.7%)이 있었다. 주간지는 정정 1건, 정정+반론 1건, 정정+반론+손배 1건이었다.

일간지에서는 제주일보(21건, 77.8%), 제민일보(22건, 78.6%), 제주타임스(3건, 75.0%)에서 정정보도 청구가 많았다. 한라일보(11건, 47.8%)는 다른 일간지들에 비하여 정정보도 청구가 적었으나, 상대적으로 손해가 포함된 병합청구가 많았다.

TV는 정정보도 5건(21.7%), 반론보도 3건(13.0%)이었으며, 병합청구로 정정+손배 8건(34.8%), 추후+손배 7건(30.4%)이었다. KBS제주는 여타 방송사들에 비하여 정정, 반론 대신 손해가 포함된 병합청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인터넷신문은 정정보도 2건(14.3%), 추후보도와 손해가 각각 1건이었으며, 병합청구로 정정+반론 1건(7.1%), 정정+손배 2건(14.3%), 추후+손배 6건(42.9%), 정정+반론+손배 1건이었다. 포털은 정정보도 3건(60.0%), 손해 2건(40.0%)이었다. 월간잡지는 2건 모두 정정보도 청구였다.

매체유형별로 종합해보면, 인쇄매체인 일간지, 주간지, 잡지 등은 정정보도 청구가 많았으며, 전자미디어인 TV, 인터넷신문, 포털 등은 상대적으로 손해와 병합된 청구가 많았다.

(2) 매체유형별 피해유형

일간지는 허위보도 58건(70.7%),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 8건(9.8%), 편파보도 8건(9.8%), 과장보도 4건(4.9%), 오기보도 3건(3.7%), 나쁜 인상 유도보

도 1건이었다. 주간지는 3건 모두 허위보도였으며, 월간잡지는 허위보도와 나쁜 인상 유도보도가 각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일간지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V는 허위보도 12건(52.2%),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 7건(30.4%), 편파보도 2건(8.7%), 나쁜 인상 유도보도 1건, 관련 없는 사진보도 1건이었다. TV 간에도 피해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인터넷신문은 허위보도 7건(50.0%), 수사결과 전 혐의보도 7건(50.0%)가 전부였다. 포털은 5건(100%) 모두 허위보도였다.

(3) 연도별 청구항목

1996년까지는 정정보도 청구만 있었다. 89년 3건, 90년 2건, 91년 4건, 92년 2건, 93년 2건, 94년 6건, 95년 8건, 96년 3건 등 모든 기사가 정정보도 청구였다.

반론보도 청구는 1997년(2건)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추후보도 청구는 1998년(1건)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보도형 병합청구인 정정+반론 1건과 손배형 병합청구인 정정+손배 2건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2006년 이후부터는 손배형청구가 정정과 반론 등의 보도형청구를 앞서기 시작했다. 최근으로 올수록 연도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손배형청구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청구항목별 피해유형 현황

편파보도로 분류된 기사 10건에 대한 청구는 정정보도(8건, 80.0%)와 반론보도(2건, 20.0%)가 전부였다. 오기보도 3건(100%)도 모두 정정보도 청구였다.

허위보도에 대한 86건의 청구 가운데 정정 58건,

반론 7건, 정정+반론 3건 등 일반 청구형 기사는 68건(79.1%)이었으며, 손배 3건, 정정+손배 11건, 정정+반론+손배 4건 등 손배형청구는 18건(21.0%)이다.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는 추후 2건, 손배 3건, 추후+손배 16건, 정정+반론+손배 1건이었다. 이 유형의 경우, 추후 2건을 제외한 20건(90.8%)이 손배형 청구 기사였다.

과장보도는 반론(3건, 75.0%)이 가장 많았으며, 나쁜 인상 유도보도는 정정, 반론, 정정+손배 각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관련 없는 사진기사 1건은 반론청구였다.

(5) 청구항목별 신청인유형

신청인이 개인인 기사 79건 가운데 정정 35건, 반론 11건, 추후 2건, 정정+반론 1건 등 보도형청구는 49건(62.0%)이며, 손배 6건, 정정+손배 6건, 추후+손배 16건, 정정+반론+손배 2건 등 손배형청구는 30건(40.0%)이었다.

신청인 유형이 회사인 경우에는 32건 가운데 정정 21건, 반론 3건, 정정+반론 1건 등 보도형청구가 25건(78.1%)이었으며, 정정+손배 4건, 정정+반론+손배 3건 등 손배형청구는 7건(21.9%)이었다. 이익단체는 11건 중 정정보도 9건(81.8%)이며, 손배+정정 2건(18.2%)이었다.

국가기관은 4건(100%)은 모두 정정보도 청구였고, 종교단체 1건도 정정보도 청구이다. 교육기관은 정정+반론 1건, 정정+손배 1건이었다.

(6) 청구항목별 의견제시 유형

일방의견제시형 기사 86건 가운데 정정 39건, 반론 8건, 추후 2건, 정정+반론 3건 등 보도형청구 기사는 52건(60.5%)이었으며, 손배 5건, 정정+손배 12

건, 추후+손배 15건, 정정+반론+손배 2건 등 손배형 청구 기사는 34건(39.5%)이었다.

상반의견제시형은 기사 43건 가운데 정정 31건, 반론 6건 등 보도형청구 기사는 37건(86.1%)이었으며, 손배 1건, 정정+손배 1건, 추후+손배 1건, 정정+반론+손배 3건으로 손배형청구 기사는 6건(13.9%)이었다.

V. 결론과 논의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 보도기사는 언론의 공익성을 실현하는 ‘표현의 자유’와 피해 당사자인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저널리즘 현장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언론중재 위 제주중재부에서 다룬 조정 및 중재신청 대상 보도 기사들의 뉴스구조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정신청대상 기사의 뉴스구조 특성은 첫째, 중심주제로 보면 사건·사고·범죄(33건, 25.6%)와 행정·정책(32건, 24.8%)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매체별로 보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일간지에서는 행정·정책이 사건·사고·범죄보다 10% 가량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TV에서는 사건·사고·범죄가 행정·정책보다 약 30%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신문은 50%가 교육분야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매체별로 다루는 중심주제의 영역이 다름을 확연하게 보여주며, ‘잘못된 보도’ 논의를 떠나 다양성 측면에서 보자면 매체별로 뉴스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하겠다.

한편, 제주지역의 이러한 결과는 지난 3년간(2005~2007) 대구지역의 사례(정결진, 2008)에서 사건·사고·범죄(61.8%)기사가 매우 높게 나타났던 점과도 대조적이다. 참고로 2007년 중앙일간지 사례(최낙진, 2008)에서는 정책·행정(29.3%)이 사건·

사고·범죄(18.3%)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리드 기사의 가치 부여 형태에서도 매체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사 전체로는 기사의 주관적 판단이나 의미를 표현하는 행위라 할 수 있는 가치 부여(55.0%)가 약간 높게 나왔다. 기사의 가치부여는 의미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체유형별로 보면, 인쇄매체인 일간지, 주간지, 잡지에서 가치부여 기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영상·온라인 매체인 TV, 인터넷신문, 포털 사이트에서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기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간지에서 가치부여 기사가 높다는 것은 선행연구(최낙진, 2008)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는 일간지들의 환경감시와 사회고발 기능을 우선하는 관행에서 연유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으나, 특히 개인을 상대로 한 기사에서는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하겠다.

보도태도에서도 매체유형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간지는 비판/부정적 기사가 45건(54.9%)으로 TV 6건(26.1%)보다 높았다. 주간지와 월간잡지 기사 모두는 비판/부정적 기사였다. 이처럼 오프라인형 인쇄매체들에서는 비판/부정적 기사가 많은 반면, 영상과 온라인형인 TV, 인터넷신문, 포털에서는 중립/양비론적 기사가 대세를 이루었다.

의견제시형태는 전체적으로 상반의견제시형보다는 일방의견제시형이 많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일간지에서는 상반의견제시형(47.6%)이 높게 나타났다. TV의 상반의견제시형 기사는 3건(13.0%)에 불과했으며, 포털은 5건 모두, 인터넷신문은 1건을 제외한 13건의 기사가 일방의견제시형이었다.

셋째, 정보원(原) 출처 활용 수에 있어서도 매체별 차이는 나타났다. 정보원 출처가 나타나지 않는 기사 14건은 일간지가 13건(92.9%)으로 TV 1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일간지에서 나타나는 기사유

형인 기자석, 기자수첩과 같은 가십기사나 사설처럼 기사나 논설인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작용하는 기사에서 기인한 특성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원(原) 출처 활용 수에 있어 3개 이상을 활용한 매체는 일간지가 14건, TV가 1건이었다. 잡지도 2건 중 1건이 있었으나 절대 수가 적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특히 TV는 시청각을 주로 사용하고, 시간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인쇄매체에 비하여 정보원 출처 활용 수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정보인용출처는 인터넷신문, 포털, 월간잡지에서 모든 기사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반면, 이들 매체들에 비하여 일간지와 TV에서는 정보인용출처가 불명확한 기사들이 10%정도 나타났다. 정보인용출처가 명확한 것은 기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동근, 2001; 이재경·김진미, 2000)인만큼 정보인용출처 불명확 기사 비율은 더욱 낮아져야 할 것이다.

넷째, 제주지역에서 실·익명처리는 매우 민감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지역의 특성상 약간의 정보만 제공되어도 개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정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에서는 그간의 실명, 익명의 구분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실명처리 정도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완전실명의 경우는 일간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성명만 밝히는 경우는 TV에서, 암호형인용은 인터넷신문과 포털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사의 실·익명 처리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연도별 변화이다. 1998년까지는 완전실명 기사가 전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완전실명기사는 1999년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공인(公人)으로 분류 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완전실명기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03년도 이후부터는 성명만 밝히는 경우와 '씨'와 같은 암호형인용이 많아졌다.

취재원 적시에서 익명처리는 취재원 보호라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보와 허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함에도 제주지역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익명처리가 많아지는 것은 부정확한 보도에 대한 기자의 책임회피, 취재의 편의 남용(이상기, 2006) 등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해석을 요구한다. 물론 익명보도는 취재원 보호 및 인격권 확보의 차원에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익명보도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장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환경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적절한 장치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 중재과정에서 취재원의 제한적 실명이 장려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다(최낙진, 2008).

다섯째, 제주지역의 제목 따옴표 인용은 39건(30.2%)으로, 2007년 중앙 일간지 37.2%(최낙진, 2008)보다는 적은 편이다. 하지만 제주지역 일간지로만 보면, 전체 기사 82건 가운데 33건(40.2%)이 제목 따옴표 인용이어서 중앙 일간지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제목 따옴표 인용은 다른 매체들에 비하여 제주일간지와 인터넷신문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직접인용구는 기사 본문에 있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만 제목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사 내용이 과대포장되거나 침소봉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있다(박재영, 2006). 반면, 직접인용은 사람의 말을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인간적인 체취를 가미하게 되며, 직접관찰에 못지않은 사실로서의 설득력을 갖게 된다(송용희, 2005)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본문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직접인용부호의 사용이다. 이러한 직접인용부호의 남용은 기사 내용을 왜곡하거나 포장할 가능성을 커지게 하기 때문이다. 제주지역에서 본문내용과 완전일치 하지 않은 부분일치와 완전불일치의 직접인용 따옴표 사용 기사는 43.0%였다.

다음으로 청구항목별 기사의 특성은 첫째, 매체유형별 청구항목을 보면, 오프라인형 인쇄매체인 일간

지, 주간지, 잡지 등은 정정, 반론 등의 보도형청구가 많았고, 지역TV와 인터넷신문은 손배형청구가 많았다. 매체유형별 피해유형은 일간지와 주간지에서는 허위보도가 높았고, 상대적으로 지역TV와 인터넷신문은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TV와 인터넷신문의 경우, 타 매체에 비해 기술적으로 속보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라 보인다. 따라서 TV, 인터넷과 같은 속보성 매체와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의 연관성에 대한 추후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둘째, 최근으로 올수록 손배형청구가 많아지고 있다. 1996년까지는 정정보도 청구만 있었으며, 1997년 반론보도, 1998년 추후보도가 처음 등장했다. 이러한 보도형청구들은 2004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2005년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손배청구가 도입됨에 따라 정정+반론의 보도형 병합청구와 정정+손배의 손배형 병합청구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2006년 이후는 손배형청구가 보도형청구를 앞서기 시작했다. 최근에 와서는 손배형청구가 더욱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는 손배형청구가 일반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론중재위에서도 언론피해 대상자들의 손배형청구를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이다.

셋째, 청구항목별 피해유형을 보면 편파보도, 나쁜 인상유도보도, 과장보도, 오기보도 등 보도형청구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허위보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손배형청구가 많았으며, 특히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 보도는 대개 손배형청구로 이어졌다.

신청인유형에서 보면, 손배형청구는 개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회사였다. 이익단체에서도 손배형청구가 나타났다. 반면, 국가기관과 종교단체 등은 모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향후 개인과 회사의 손배형청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견제시유형으로 보면, 일방의견제시형에서 상대적으로 손배형청구가 높게 나타났다. 일방의견제

시형은 상반의견제시형보다 손배형청구가 3배 가량 높게 나왔다. 반면, 상반의견제시형에서는 보도형청구가 주를 이루었다.

청구항목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금은 보도형청구보다는 손배형청구가 대세이며, 향후에는 손배형청구가 기본이 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그간 손배형은 국가기관과 단체보다는 개인과 회사가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일간지보다는 TV와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손배형청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기사내용으로 보면, 허위보도와 특히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에서, 기사형식에서는 일방의견제시형 기사에서 손배형청구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제주지역 언론들의 취재 방식, 기사작성, 뉴스 편집 등 저널리즘 전반에 대한 검토와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연구는 제주지역의 언론조정신청대상 보도기사를 전수조사하였음에도, 129건이라는 적은 사례 수에서 오는 내용분석 상의 한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비교 분석이나 유형 분류를 할 경우, 1~2건의 사례들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신청인에서 2명의 사례가 빠져 있음도 밝혀 둔다. 같은 매체, 같은 기사임에도 신청인이 각각 달라, 이 경우는 주 신청인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만을 신청인유형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실제 신청인 수는 2명이 더 추가되었어야 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정정, 반론, 추후 등의 보도형청구와 손배 등의 손배형청구가 실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부상준(사회자, 제주중재부장)

최낙진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발표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시작하겠다. 오늘 발제 내용이나 언론중재위원회와 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의견, 궁금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기 바란다.

김방홍(KBS 보도국장)

청구항목별 피해유형을 편파보도, 허위보도,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 등 7개 항목으로 분류해 분석해 주셨다. 그런데 이같은 분류는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일 수 있다. 조정결과 실제로 나타난 보도유형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그리고 수사결과 발표 전 혐의보도로 인해 조정신청된 기사수는 22개인데, 데스크을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사건, 사고를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이다. 사건, 사고는 주로 기소 전 경찰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기사화 하는데, 이때 익명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제주도의 경우, 도민이 55만명에 불과해 피의자나 당사자가 특징이 되기 쉽다. 완전 익명으로 하면 기사가 대단히 모호해 질 수 있으므로, 특정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조정에 참고해 주길 바란다.

최낙진(발제자,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우선, 최근 3년간의 제주조정사건만 본다면 대부분 신청인 요구가 신문이나 방송에 반영되어 보도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분류가 타당하리라고 본다. 이번 연구는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중재부에 조정신청 접수된 175건(실제 기사 수는 129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였으나, 적은 사례수에서 오는 내용분석상의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에는 이번 연구의 연장선으로 전체조정사건을 대상으로 조정 후 결과가 실제로 어떻게 신문이나 방송에 반영되었는가 추후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장은식(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제주지역 언론의 문제점이라면 언론사의 영세성이다. 언론사의 인원이 적어 심층분석 기사는 드물고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기사가 많다. 또한 언론사가 대기업과 같은 광고주의 눈치를 보느라 언론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언론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당부하고 싶다.

이문교(제주언론인클럽 회장)

기사유형과 기사 가치 부여 분석표를 보면 전체 분석기사 129건 중 108건(83.7%)이 스트레이트 기사이고, 71건(55.0%)이 기자의 주관적 판단을 표현하는 등리드기사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기자의 주관 이 많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조정신청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해석할 수 있다.

최낙진(발제자,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스트레이트 기사에 기자의 주관 이 개입되는 것과 조정신청의 상관관계를 통계 분석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적극적인 사회 고발, 환경 감시가 언론의 본래 기능인데 이를 충실히 이행하다 보면 당사자로부터 조정신청을 당할 수 있다. 다만 스트레이트 기사는 정보제공이 주요 목적이므로 이에 충실해야 하며, 특히 리드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다만 피처기사의 경우에는 기자의 강한 주관 이 개입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고창실(전임 중재위원)

연도별 청구항목 변화를 보면 단독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기사수는 6개에 불과한데, 정정보도청구와 손배를 병합청구한 것은 13개, 추후보도청구와 손배를 병합청구

한 것은 16개이다. 제주지역에서 이처럼 손배를 정정이 나추후와함께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최낙진(발제자,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제주도에서 손배형 청구를 하였으나 실제 금액이 지급된 사례는 없었다. 아마 신청인이 실제로는 정정이나 반론, 추후보도를 유도하기 위해 손배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손배가 청구된 사건을 보면 내용상 실제 손배가 이뤄져야 할 사건이 많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제주지역에서 실제 손배가 이뤄진다면 어떤 전기(轉機)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사가 이를 계기로 보도에 더욱 책임감을 가질 것이므로 기사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고창균(제주영상위원회 사무국장,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강사)

언론의 사회적 영향을 감안하면, 잘못된 보도로 인해 기업이 문을 닫거나, 개인이 평생 불명예를 갖고 살아야 할 수 있다. 제주지역의 조정처리건수가 타지역에 비해 적은 것이 다행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조정신청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정신청이 된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취재기자의 언론관이나 기자의 소양, 신중하지 못한 취재 행태 등이 그 원인이라 생각한다. 중재위원이나 발제자가 생각하기에 조정신청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최낙진(발제자,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데이터만으로는 조정신청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어려우나, 질의자가 말한 것도 그 원인이 될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제주도의 좁은 지역색으로 인해 분쟁 발생시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분쟁의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백진주(제주YWCA 사무총장)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전체 처리사건 중 제주지역 사건은 1%에 불과하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위원회 역할에 대한 욕구가 많은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발생시 이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이용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위원회 홍보를 많이 해주길 바란다.

김용주(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위원회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월 200~300건의 상담을 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인구가 적고, 매체수가 적어서인지 조정신청건수뿐 아니라 상담 자체도 드물다. 사건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발생시 이를 구제하고,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위원회 홍보를 다각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예산상 제약으로 인해 비예산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네이버 등 주요 포털 Q&A에 언론분쟁관련 전문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지자체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오광건(언론중재위원회 연구본부장)

위원회 소식지의 경우 작년부터 1만부씩 발행하고 있는데, 소식지에 위원회 기능, 주요 사례를 수록해 동사무소, 공공기관 홍보실, 전국 국민은행 지점 등에 배포하고 있다. 특히 위원장께서 직접 언론사 인터뷰에 응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시다. 또한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한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보도자료를 배포, 언론사에 보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무총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3명의 위원회 변호사를 상담역으로 두고 주요 포털에 전문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위원회의 기능, 주요 조정 사례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포털의 광고비를 감안하여 추산하면 이는 약 10억 상당의 광고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예방 교육 및 피

위영석(제주도기자협회 회장)

요즘은 시민들이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 고 생각하면 직접 언론사로 항의한다. 또한 언론사 자체 고충처리인 제도를 통해 이러한 불만을 처리하고 있다. 조정신청 건수가 적다는 것은 위원회 홍보 문제보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이 되기 전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길 바란다. 한편, 매체유형별 보도태도에서 중립/양비론적 기사가 69건인데, 이러한 유형의 기사에 대해서도 반론이 적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발제자는 어느 정도의 크기와 분량의 반론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최낙진(발제자,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반론의 크기나 분량은 가급적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언론사는 기사에 반론을 반영하는 것에 소극적인데, 이는 기사에 반론이 많으면 독자들이 기사에 허점이나 약점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인정되는 주장이나 반론이 있다면 가능한 상세히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언론의 자세라 본다. 이러한 노력이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호감도를 높이고 언론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경중(제주CBS 본부장)

국민의 권리 의식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로서는 조정신청이 많아지는 것을 당연시해야 한다. 실제 언론사는 데스크가 심리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신청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언론사가 별도 창구를 만드는 등 제도적인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내부 변호사를 고용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를 통해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보

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위원회는 성공적인 조정을 위해 양당사자에게 상호 양보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양당사자의 입장을 너무 고려하다 보니 위원회 가치판단에 대해 당사자 모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가 조정을 수용할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확실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이런 점은 위원회가 보완해야 한다.

부상준(사회자, 제주중재부장)

여러 고견을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리며, 오늘의 논의 내용은 위원회가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위원회의 발전과 언론조정·중재제도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권 성(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지금까지 특정지역에서 조정신청된 기사 유형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었는데 발제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분석사례가 많지 않아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상당히 의미있는 연구였다. 제주일보 1945년 10월 지방에서 최초로 '제주신보'라는 제호로 창간되었다. 제주지역이 현재 세계 7대 자연경관 후보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함께 우리나라 지방 신문의 효시가 된 점은 큰 영예라 생각한다.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보답하는 의미로 오늘 나온 주요 의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변화에 관한 것이다. 과거에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이나 반론과 함께 손해배상을 병합 청구하면, 중재부가 정정이나 반론으로 화해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은 취하하도록 권고했다. 손해배상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최근에는 그나마 진일보하여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그 금액이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에 중대한 두 가지 변화가 있다.

첫째, 형식적·상징적 수준의 손해배상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과거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 대부분이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인격권 침해를 넘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가 늘고 있다.

물론, 위원회로서는 언론사의 재정상황 또한 중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위원회는 적정 수준의 타협안을 양당사자에게 제시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는 추세로 볼 때 향후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점에서 언론사로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비록 시의성, 속보 경쟁 등으로 인한 한계가 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보도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면하기 어렵다. 이것은 정확한 보도를 통한 언론의 품격 향상과도 연관된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부분이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확립되어 있는데, 재정사정이 열악한 지역 언론사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받을 경우 그 존립이 위태롭기까지 한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우리나라도 언론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언론사에서도 손해배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또한, 언론의 재난 사고, 사건 등에 대한 보도행태를 보면, 피해자의 오열하는 모습이나 슬픔에 잠긴 모습을 과도하게 클로즈업하여 보도하고 있다. 이것 역시, 손해배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현재는 단순한 권고에 불과하지만, 향후 손해배상 문제로 비화되면 언론사가 곤란해 질 수 있다.

위원회 홍보와 관련해, 그간 위원회 내부에만 배포

하던 소식지를 작년부터 증면, 발간부수를 1만부까지 확대하여 위원회와 언론조정·중재제도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은행, 공공기관 등 국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는 위원회 사무처 임원들을 교육 일선에 참여시켜 교육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

한편, 언론사가 위원회 조정을 통해 정정이나 반론 보도문을 게재할 때, ‘바로잡습니다’, ‘알려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잡습니다’ 등으로 게재할 경우,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바로잡는다는 것과 혼동이 있을 수 있다. 향후에는 그 내용이 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비록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중재부에서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권유하고자 한다.

끝으로, 전년도 제주지역의 조정신청 사건이 48건이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이 없다. 이는 제주지역 언론사가 충실한 보도를 하고 있으며, 앞서 논의된 것처럼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당사자가 조정 신청 전에 화해를 하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경우에 따라 양금이 남을 수 있고, 작은 양금이 향후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정·중재 전문기관인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장시간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